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585
- 발 의 자 : 윤기섭 의원 외 37명
- 발 의 일 : 2024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2. 주문

- 소년범죄 예방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3. 제안이유

- 집단폭행, 성범죄, 무면허 운전, 절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사회적인 논의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들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처분 결과가 범죄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음.

- 다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반면에 SNS 등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모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을 위해 「형법」 및 「소년법」 개정 촉구를 건의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형법」, 「소년법」.
- 나. 기 타 : 없음.

5.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법무부, 서울특별시

6. 검토 의견

가. 건의안 개요

- 본 건의안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소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 「형법」(제9조)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년법」(제2조 및 제4조)도 14세를 기준으로 범죄소년(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구분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처분할 수 있고,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한 죄를 범한 경우 형벌이 부과되고 있음.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送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소년의 분류〉

유 형	대상자 (법 제4조제1항각호)	형사처벌	보호처분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
우범소년	다음 가·나·다의 사유가 있고(우범사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우범성) 10세 이상인 소년(19세 미만)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용받으며, 제32조에 규정된 10개의 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됨.

* 범죄소년은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규정(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제3장 형사사건 규정(형사처벌)도 적용. 다만,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받게 됨(제50조 등).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비교 〉

구 분	형사처벌	보호처분
종류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감호위탁, 수감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등
절차상 특징	법원의 일반 형사절차	법원 소년부가 검사 관여 없이 진행
근거 법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소년법」
전과 유무	전과가 남음	전과가 남지 않음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더욱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14세)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14세)을 낮추자는(14세 → 12세 또는 13세) 입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촉법소년 관련 주요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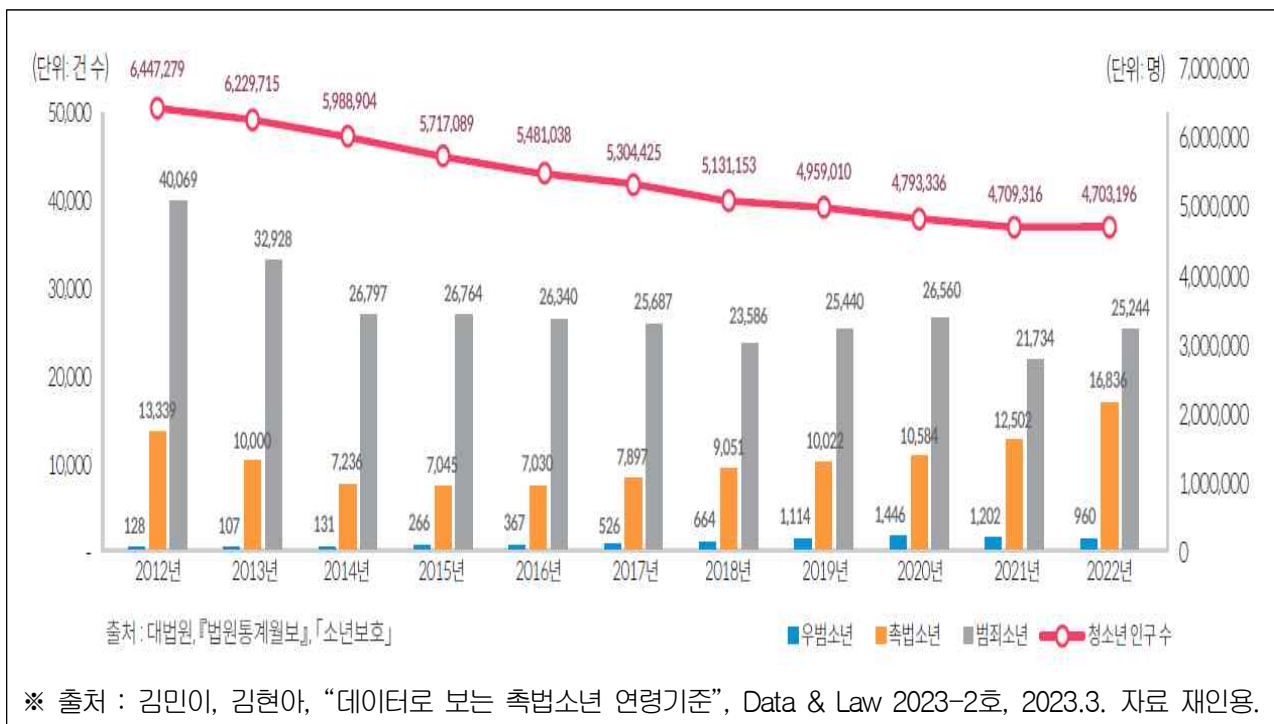
연번	사건명	범 죄 요 지
1	촉법소년의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 '18. 2.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군 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후 극단적 선택
2	문지마 살인미수 사건	▶ '15. 6. 13세의 촉법소년이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로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3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 '22. 7.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
4		▶ '22. 8.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요치 8주 중상을 가하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 폭행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2022년 10월 26일자 재인용.

○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 필요성을 살펴보면,

- 먼저, 대법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4세 미만 소년의 보호처분 비율은 2020년(COVID19의 확산시기)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소년범죄 접수현황 〉



〈 보호처분 소년 연령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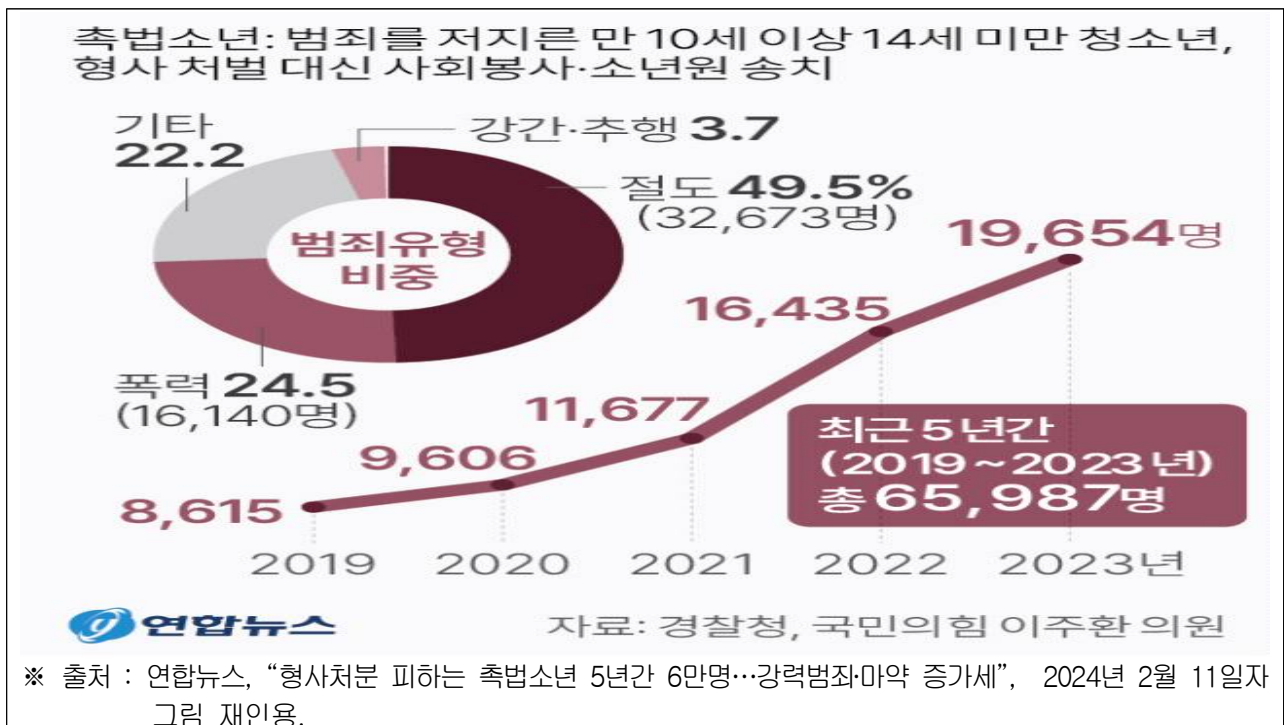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합계	14세 미만	16세 미만	18세 미만	19세 미만
2017	24,383	3,365(13.8)	6,086(25.0)	10,467(42.9)	4,465(18.3)
2018	24,494	3,483(14.2)	7,043(28.8)	9,701(39.6)	4,267(17.4)
2019	24,131	3,827(15.9)	7,393(30.6)	8,917(37.0)	3,994(16.5)
2020	25,579	3,465(13.6)	8,088(31.6)	9,852(38.5)	4,174(16.3)
2021	22,144	4,142(18.7)	6,804(30.7)	7,849(35.5)	3,349(15.1)
2022	24,933	5,245(21.0)	8,176(32.8)	8,124(32.6)	3,388(13.6)

※ 출처: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2023년 9월, 874면.

-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유형과 비중은 절도가 49.5%로 가장 많고(3만2천673명), 폭력(1만6천140명, 24.5%), 기타(1만4천671명, 22.2%), 강간·추행(2천445명, 3.7%), 방화(263명), 강도(54명), 살인(11명)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강력범죄(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마약은 3배(15명에서 50명) 이상 증가하는 등¹⁾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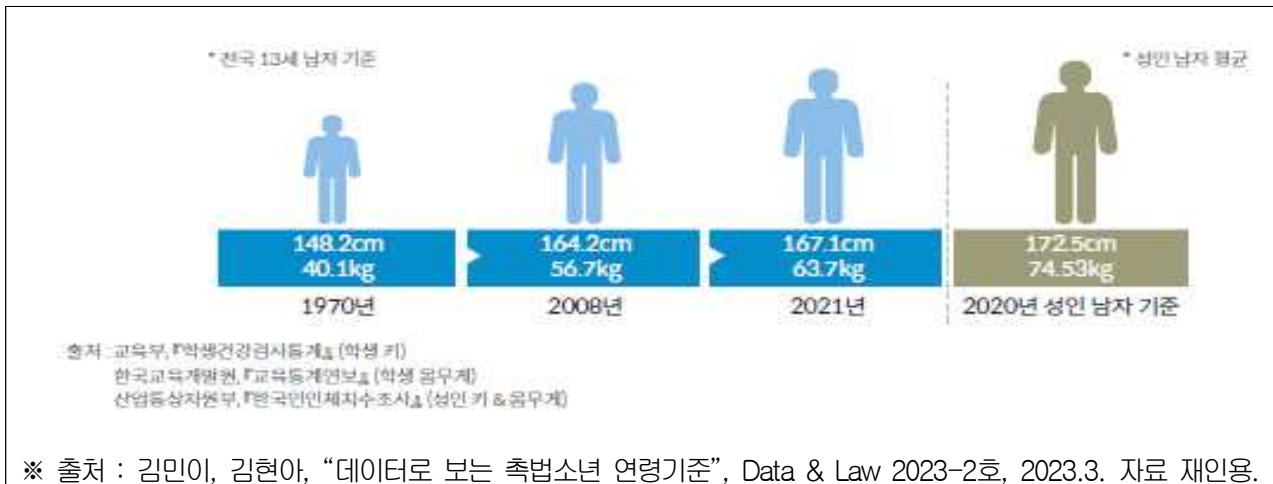
〈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현황 〉



- 세 번째로, 과거에 비해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더 어린 나이에 성인의 체격에 도달하고 있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민법」(제4조)상의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을 20세에서 18세로(제15조제1항),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18세로(제16조제2항) 하향하고 있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1) 연습뉴스, “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 2024년 2월 11일자 참고

〈 평균 신장 및 몸무게 변화 〉



- 네 번째로, 주요 국가 중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호주는 형사책임연령이 10세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형사책임연령이 12세, 프랑스는 13세로 하고 있고, 미국은 7세부터 13세까지 각 주마다 형사책임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기준 〉

연 령	국 가
10세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12세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스코틀랜드), 멕시코 등
13세	프랑스
14세	대한민국, 독일,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등
15세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 미국은 7세부터 13세까지 각 주마다 상이함.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16 참조(2024년 2월 14일 방문).

- 마지막으로, 2022년 8월 촉법소년 연령 설정에 대한 입법의원 조사 결과²⁾ ‘폐지 또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84.2%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만 69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 조사한 결과임.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 입법의원조사 결과보고서(상반기)』, 2022년 8월, 21-22면 참고.

‘모든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가 30.3%,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가 28.7%, ‘소년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가 25.4%,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가 8.8%,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높여야 한다’가 7.0%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겠음.

- 또한,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2022년 10월 26일)”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2022년 12월)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 21대 국회 제출된 「형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및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853) 김예지 의원	2020.09.14.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 다스림.
	(2107847) 전용기 의원	2021.02.02.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 로 조정.
	(2110765) 김병욱 의원	2021.06.21.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로 하향
	(2112623) 김용민 의원	2021.09.17.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 로 조정. 다만, 형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제외.
	(2115136) 김희재 의원	2022.04.07.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 로 조정,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히 다스리도록 함.
	(2115376) 허은아 의원	2022.04.22.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 으로 조정, 10세 이상인 자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강력 범죄 및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히 다스림.
	(2116151) 홍석준 의원	2022.06.27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로 하향 조정.
	(2119216) 정부	2022.12.28.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 로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49) 전용기 의원	2021.02.0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 로 함.

(2110766) 김병욱 의원	2021.06.11.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함.
(2112644) 김용민 의원	2021.09.2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함.
(2114464) 서영교 의원	2022.01.18.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에서 13세로 함. 또한,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범하였을 때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
(2114932) 이종배 의원	2022.03.2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함.
(2115135) 김희재 의원	2022.04.07.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함.
(2115377) 허은아 의원	2022.04.2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함.
(2119215) 정부	2022.12.28.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함.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024년 2월 14일 검색

- 이처럼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하향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본 건의안은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요구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 첫 번째로, 최근 소년의 신체적 발육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신체적 성숙이 곧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에 있어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험적·과학적 연구나 검증이 부족하고, 「민법」과 「공직선거법」상 연령 하향은 해당 연령자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13세의 소년이 형사책임을 질만큼 성숙하였는가와는 무관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며,³⁾

- 두 번째로, 해외입법례를 고려함에 있어 형사책임연령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며,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Child, CRC)는 ‘아동사업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에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으로 촉구하고 있고,⁴⁾
-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적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⁵⁾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다. 종합 의견

- 본 건의안은 현행 「형법」과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14세)과 촉법소년 연령 상한(14세)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3) 박소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11.30. 참조

4) 박소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11.30. 참조

5) 국가인권위원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2022년 9월 26일 참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 등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연령 상한을 낮추어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강력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법」과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하겠음.

-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14세)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14세)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음에 따라 촉법소년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바,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의 개정(14세 → 12세 또는 13세)을 위한 「형법」과 「소년법」의 개정을 위한 본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의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실효적 방안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년범죄에 대한 신속한 개입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